

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의 안 번 호	2541
------------	------

이봉준 의원 (국민의힘, 동작구1)

- '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' 구성과 관련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조성·관리하고자 함

- 주요내용
 - 가.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추가함(안 제14조제3항제4호 신설)

- 관계 법령 :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-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